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3.
외교통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1월 14일, 한정애 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22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외교통일위원회(2025년 2월 26일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23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년 3월 6일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23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외교통일위원회(2025년 3월 11일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한정애 의원)

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,770여명임.

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,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.

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

또한 특례의 대상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%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

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

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,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4조의3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사우)

개정안은 공유재산 대부·사용 특례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(지원대상 확대),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(지원범위 확대)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다만, 개정안은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까지 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어, 다른 기관·단체·소상공인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,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라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추가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에 공유재산의 “매각”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는 공유재산의 “대부”보다 강력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

인바,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함으로써 조 제목과 본문을 일치시키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, 또한, 시행령 정비를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)

한정애의원, 박충권의원, 김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「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,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